

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31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관	(주)하나은행

2. 조치내용

- 과징금 949,800,000원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-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

- 증권의 주선인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음에도
- (주)하나은행은 집합투자증권의 주선인으로서 '19.3월~7월 기간 중 집합투자업자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모집할 수 없는 총 10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1,185억원을 448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함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확인 및 미제출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

나. 근거법규
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제1항 제2호, 제430조 제1항, 제9조 제7항 및 제13항, 제119조 제1항, 제125조 제1항 제5호
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9조 제2항, 제11조 제1항, 제120조 제1항, 제135조 제2항